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63674 판결 [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636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가단50274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8. 1. 18.

판결 선고 2018. 2. 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가단50274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2016.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나.항 중 ② 부분

②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 및 피고와 원고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내용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D과 피고가 동업 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D에게 그 사업자금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나.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 부분 :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은성

판사이재경

판사이애정